

인지발달지도사 자격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「인지발달지도사」의 자격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「인지발달지도사」라 함은 교육현장에서 아동·청소년·노년기 전 생애에 걸친 인지발달능력을 진단 평가하여 인지교육, 인지발달, 중재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.

제 2 장 자격규정

제 3 조(구분) 인지발달지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인지발달지도전문가
2. 인지발달지도사 1급
3. 인지발달지도사 2급
4. 위 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 한다.

제 4 조(인지발달지도 전문가) 인지발달지도 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대학원에서 아동학, 심리학, 교육학 등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, 본 학회가 주관하는 120시간의 인지발달지도 전문가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(자격시험 합격 전후 각 2년 이내에 수련시간 인정)
2. 대학원에서 아동학, 심리학, 교육학 등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, 본 학회가 주관하는 120시간의 인지발달지도 전문가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(자격시험 합격 전후 각 2년 이내에 수련시간 인정)
3. 「인지발달지도사 1급」 자격증을 취득하고,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감독 아래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본 학회가 주관하는 120시간의 인지발달지도 전문가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4.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수직을 가진 자로서, 본 학회의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

제 5 조(인지발달지도사 1급) 인지발달지도사 1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대학원에서 아동학, 심리학, 교육학 등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, 본 학회가 주관하는 100시간의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(자격시험 합격 전후 각 2년 이내에 수련시간 인정)
2. 대학에서 아동학, 심리학, 교육학 등의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

자료, 본 학회가 주관하는 100시간의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 (자격시험 합격 전후 각 2년 이내에 수련시간 인정)

3. 「인지발달지도사 2급」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감독 아래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본 학회가 주관하는 100시간의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을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제 6 조(인지발달지도사 2급) 인지발달지도사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대학에서 아동학, 심리학, 교육학 등의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본 학회가 주관하는 80시간의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2. 전문대학에서 아동학, 심리학, 교육학 등의 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,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80시간의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을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제 3 장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

제 7 조(자격시험 종류와 과목) 자격등급별 자격시험 과목은 <표1>에 제시 된 바와 같다.

지원자격	시험		
	공통 필수 과목	선택 심화 과목	
인지발달지도전문가	뇌와 인지발달 이상심리 발달진단 및 평가	발달심리 인지발달 인지행동상담 학습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	택 2
인지발달지도사 1급			
인지발달지도사 2급			

제 8 조 (자격시험 합격) 자격등급별 자격시험 합격 기준은 <표2>에 제시된 바와 같다.
합격한 과목은 발표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.

인지발달지도 전문가	합격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고,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한다.
인지발달지도사 1급, 2급	합격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고,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<표 2> 자격등급별 자격시험 합격 기준

제 9 조(자격시험 시행)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 10 조(수련과정)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과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 11 조(자격청구 및 심사)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자격청구 요건을 갖춘 자로서,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인지발달지도사 「자격심사 전형위원회」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. 자격청구 및 심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청구 및 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 12 조(자격유지)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, 자격유지 시행은 자격유지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 4 장 자격심사 전형위원회

제 13 조(자격심사 전형위원회)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시험을 관리, 운영하기 위하여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심사 전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.

제 14 조(구성) 인지발달지도사 「자격심사 전형위원회」는 인지발달중재학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.

제 15 조(위원장) 인지발달중재학회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.

제 16 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인지발달중재학회 학회장의 임기에 따르며, 연임 가능하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인지발달중재학회 이사회에서 행한다.

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◆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세칙

제 1 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시험 방법)

1. 자격시험은 과목별 30문항이며, 객관식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.
2.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 3 조(시험 실시 및 공고) 자격시험은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,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한다.

제 4조(시험 출제) 자격시험은 객관식을 원칙으로 하며,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.

◆ 인지발달지도사 수련과정 시행세칙

제 1 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인지발달지도사 자격규정에 규정한 인지발달지도전문가, 인지발달지도사 1급/2급 수련과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수련자격) 인지발달지도사 자격규정 해당자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(수련내용) 자격등급별 자격 취득 수련내용은 <표3>에 제시된 바와 같다.

수련항목		수련시간			비고
		인지발달지도전문가 (120시간)	인지발달지도사1급 (100시간)	인지발달지도사2급 (80시간)	
수련 과정	연수 ^㉓	60시간	60시간	60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소 60시간 이상최대 80시간 • 본 학회 심포지엄(4시간) 및 학술대회(6시간) 포함
	워크숍 ^㉔	20시간 인정	20시간 인정	20시간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부 최대 10시간
	심리 평가	1회 검사당 2시간 인정	1회 검사당 2시간 인정	1회 검사당 2시간 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소 10시간 이상최대 20시간
	사례 발표	1회 발표당 3시간 인정	1회 발표당 3시간 인정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20시간
	논문 발표	1회 발표당 3시간 인정	1회 발표당 3시간 인정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20시간
자격시험	인지발달지도전문가 시험 합격자	인지발달지도사1급 시험 합격자	인지발달지도사2급 시험 합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효기간 3년(과목별 응시가능) 	
슈퍼비전	3회 이상	2회 이상	-	-	

<표3>자격등급별 자격취득 수련내용

㉓ 학회 연수 과목은 <표4>에 제시 된 바와 같다.

과목명
1. 발달심리
2. 뇌와 인지발달
3. 아동/청소년 인지발달
4. 성인기 인지발달
5. 영유아 언어발달
6. 이상심리
7.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
8. 특수아동상담
9. 상담심리
10. 학습상담
11. 인지행동치료
12. 부모교육 및 상담
13. 영재교육
14. IEP프로그램의 실제
15. 기타: 수요자 중심 연수 내용 (창의성, 인지와 사회 등)

<표 4> 연수 과목

㉔ 워크숍 인정 과정 및 시간은 <표5>에 제시 된 바와 같다.

과정	베일리(Bayley)		웍슬러(Wechsler)		FIE	
	초급	중급	초급	중급	BASIC	STANDARD
시간	5	5	5	5	30	20
* 이 외 본 학회 주최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워크숍 참여						
* 검사는 최근 3년 이내						

<표 5> 워크숍 인정 과정 및 시간

◆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청구 및 심사 시행세칙

제 1 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청구 및 심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자격심사 신청자격)

1. 인지발달지도사

1) 인지발달지도 전문가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한다.

- ① 인지발달지도 전문가 수련과정 이수
- ② 인지발달지도 전문가 자격시험 합격

2) 인지발달지도사(1급/2급)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한다.

- ① 인지발달지도사 1급/2급 수련과정 이수
- ② 인지발달지도사 1급/2급 자격시험 합격

제 3 조(제출서류)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최종학력 증명서
2. 자격시험 합격증명서
3. 기타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(예: 이수증 등)

제 4 조(심사 실시 및 공고)

1.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심사일시,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.

제 5 조(심사) 제출 서류는 자격심사 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
◆ **인지발달지도사 자격유지 시행세칙**

제 1 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인지발달지도사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자격유지 기준)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본 학회의 회원이며, 유효기간 내에 <표6>에 제시된 자격유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유지 기준은 모든 자격등급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
<표6> 자격유지 기준

보수교육(연수/워크숍)	학술대회 참석 ^㉞	유효기간
20시간	3회	5년

㉞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임. 학술대회 1회 참석은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게재 1편으로 대체 가능함.

◆ **인지발달지도사 윤리강령 세칙**

제 1 조 중재 대상자의 발달에 저해되는 행동 금지

제 2 조 중재 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 관련(단, 필요시 보호자 및 대상자의 허락을 받은 후

제 3자에 공개)

제 3 조 인지발달지도사는 중재 제공자로서 전문지식 함양에 최선을 다한다.

제 4 조 품위유지 관련(상벌 규정)

1.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하는 경우
2. 보호자나 대상자의 허락 없이 중재 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유출한 경우
3.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다(이사회가 상벌위원회를 겸한다).